

『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22일

나. 발 의 자 : 박교상, 강승수, 김복자, 김정곤
김태근, 박세진, 최경동, 한성희 (8명)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1월 28일

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박 교 상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가 인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인문학 생태계를 구축하고, 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- 시장의 책무,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,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-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14조)

- 인문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- 인문주간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 ~ 제1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』은

-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미 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·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